



# 충남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참조)

## 제 목 임신부 근로자 육아시간 사용기준 개선 요청 건

인권경영센터에 임신부 근로자 육아시간 사용기준 개선 요청 건이 들어와 아래와 같은 부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 내 용  
-

1. 건 명 : 임신부 근로자 육아시간 사용기준 개선  
요청 2. 날 짜 : 2020. 5.8.(금) 접수 (실명 접수)

1. 대 상 : 기획경영실 인사복지과

2. 내 용

- 1) 우리 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임신부 근로자의 육아시간 사용기준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육아시간 사용을 이용하는데 고충이 생겨 이의 개선 건의
- 2) 현재 연구원이 육아시간 사용기준으로 참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신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야한다는 기준 적용이 아니라, 최소 12주 이내, 36주 이후 기간의 임신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임신부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 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3. 요 청

- 1) 인사관리규정에 임신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규정에 대한 세부 규칙 제정
- 2) 세부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시행

끝.

센터장(초빙책임)	05/20	원장	05/21
연구원)	김병준		윤황

협조자

시행                    인권경영센터-0068                    (                    2020-05-20                    )                    접수

우 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전화 041-840-1264                    /                    전송 041-840-1199                    /                    이메일 pencil@cni.re.kr

)  
/ <https://www.cni.re.kr/>

/ 공개-대국민열람